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7. 9. 20.(수) 13:3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4. 불참위원 : 김석진 상임위원 (1인)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개회선언

④ 지난 회의록 확인

- 제29차 및 제3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⑤ 서면회의 결과보고

- 제31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음을 보고함
- 제31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⑥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견

- 국회의 2017년도 제21차, 제26차, 제27차 및 제30차 전체회의 비공개안건 속기록

제출 요구와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음영 처리 한 후 열람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함

7. 회의공개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

8. 의결사항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7-33-181)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매일방송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9호, 제19조(과징금 처분)제1항,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의안번호	법인명 (채널명)	과징금 부과
제2017-33-181호	(주)매일방송 (MBN)	·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

나. 주식회사 봄코리아-(주)엘지유플러스 간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협정 결과에 관한 재정 건 (2017-33-182)

- 신청인((주)봄코리아)이 피신청인(LGU+)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협정체결에 관한 재정 건에 대해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 LGU+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니라는 점, ‘다단계 영업에 대한 Fade-out 방침’을 결정한 이후 봄코리아의 협정체결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LGU+의 협정체결 요청 거부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 (2017-33-183)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의 일몰예정 등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하위 고시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고시 폐지(안)에 관한 건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이 '17년 9월 30일 일몰될 예정임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을 근거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고시)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2항을 포함하고 있는 고시의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함과 동시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제1항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2호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과징금의 필수적 감경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 및 폐지 관련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함

라. OBS경인TV(주)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 (2017-33-184)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에 따라 OBS경인방송(주)가 신청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을 김동철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

- OBS경인TV(주)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아래와 같이 경감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 경감 내용 >

- ▷ 경감 대상 연도 : 2017년
- ▷ 편성의무 목표 : 폐쇄자막방송 50.0%, 화면해설방송 5.5%, 수어방송 3.0%
- ▷ 경감 조건
 - ①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 시간을 일상적 시간대(07~익일 01시)에 편성할 것
 - ② 화면해설방송 재방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 공익·장애인 복지채널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채널 선정절차 등에 대한 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 추진 건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

나.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 공익·장애인 복지채널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 공익성 방송분야에서 기존의 '교육지원'분야를 '교육 및 지역'분야로 변경하고, 전문 편성내용에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를 추가 하는 등의 고시 개정 추진 건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

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실질적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일부 규제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김재영 이용자 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제정제도 개선, 분쟁 조정제도 도입, 유선포털-CP 간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 부과 및 자료제출 요구 시 이행강제금 부과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건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

10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회의는 9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4:18)